

대법원 2024. 6. 13 선고 2024다21573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6. 13 선고 2024다215733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24. 1. 16 선고 2023나201964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A(개명 전 성명: B)

피고, 피상고인 1. C

2. D

판결 선고 2024. 6. 13.

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. 1. 16. 선고 2023나201964 판결

주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이므로,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. 그런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위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상환, 대법관 이동원, 대법관 권영준, 주 심 대법관 신숙희